경조사 지원 규정

1. 적용대상

계약직 사원을 포함한 임직원(고문 및 용역은 사장이 별도로 결정)

2. 경조사 지원기준

| 구 분 | 내 역 | 휴가(일) | 금액(원) | 기타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경 사 | 본인 결혼 | 5 | 500,000 | 화환 지급 |
| | 자녀 결혼 | 1 | 300,000 | 화환 지급 |
| | 형제자매결혼 | 1 | 100,000 | |
| | 자녀 출산(배우자) | 10 | 100,000 | 1회 분할 사용 가능 |
| | 부모 회갑 | 1 | 200,000 | |
| | 배우자 부모회갑 | 1 | 200,000 | |
| | 부모고희(칠순) | 1 | 300,000 | |
| | 배우자부모고희 | 1 | 300,000 | |
| 조 사 | 본인 사망 | _ | 1,000,000 | |
| | 배우자 사망 | 5 | 1,000,000 | 조화 지급 |
| | 부모 사망 | 5 | 1,000,000 | 조화 지급 |
| | 자녀 사망 | 5 | 1,000,000 | 조화 지급 |
| | 배우자 부모 사망 | 5 | 500,000 | 조화 지급 |
| | 형제자매 사망 | 3 | 300,000 | 조화 지급 |
| | 조부모/외조부모 사망 | 3 | 200,000 | 조화 지급 |

3. 신청서류

경조금 : 경조금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

휴 가: 휴가원 1부

4. 경조휴가일수

공휴일과 경조사가 중복되었을 경우 휴가일수는 공휴일을 제외하여 계산한다.

5. 결혼퇴직

결혼퇴직의 경우 퇴직 1개월 이내에 결혼할 시에는 위의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

6. 기타

경조금 신청 시 휴가 신청도 같이 진행해야 함이 원칙임 특별한 경우 사업부장 합의 시 경조금 신청일 이후 신청 가능(6개월 이내) 분할 사용 불가, 발생일 이전 신청 불가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개정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경조사지원규정 1/1